

2013년 비공무원 운용실태 성과감사 실시결과

2013. 7. 2.



통계청 감사담당관실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-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(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) 인력운용 실태를 점검·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품질 제고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○○지방통계청 소속 현장조사 담당 비공무원

【 대상기관 선정기준 】

- 피감사 기관의 감사수감 부담 경감을 위해 “2012년도 성과감사 및 2013년도 종합감사 수감(예정) 기관”은 본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
 - 또한 기본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한 본청 감사는 연1회 실시
 - * 2012년도 성과감사 수감기관 : ○○, ○○지방통계청,
 - ** 2013년도 종합감사 수감(예정) 기관 : ○○, ○○, ○○지방통계청
 - *** 2013년도 주요통계작성 실태 수감(예정) 기관 : ○○지방통계청

- 감사범위 : 비공무원(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) 교육, 복무, 성과관리, 채용 절차, 업무배정 적정성 등 비공무원 인력운용 전반

3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‘13. 6. 13. ~ 6. 19.(5일간) * 예비 조사 : ‘13. 6. 10. ~ 6. 12.(3일간)
 - 대상기간 : ‘11. 01. 01. ~ ‘13. 05. 30.까지(2.5년)
- 감사인원 : 감사반장(감사담당관) 및 감사반원 등 총 5명

4 감사 중점 및 초점

중점 1	비공무원 성과평가 및 업무분장 적정성 등
초점	▪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(보수, 성과급, 인센티브 등) ▪ 인력배치의 적정성(업무난이도 고려한 적정업무량 부여 등) * 본부 및 사무소간 업무 형평성 등 포함

중점 2	비공무원 교육 및 채용절차*의 적정성
초점	▪ 교육이수과정과 업무 연계성 ▪ 경력 및 업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실시 ▪ 비공무원의 채용 시 공고기간, 채용절차 등 제규정 준수여부

* 연간조사 등 임시조사원 대상

II. 감사실시 결과

1. 처분내역 총괄

(단위 : 건)

구분	처분사항 조치									
	계	기관 경고	기관 주의	개인 경고	개인 주의	시정	개선	권고	통보	모범 사례(통보)
총계	6		2				2	1		1

2. 분야별 지적사항

가. 교육 및 채용분야

연번	제 목	지 적 사 항(요지)	부서 및 관련자	처분 (안)
1	통계조사원 채용 공고 부적정	- 통계조사원 채용방식에 따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‘통계조사원 채용공고문’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지침을 ’12.11.7. 운영지원과에서 시달(운영지원과-13174,) 했음에도 불구하고 ○○청에서는 ‘12.11~’13.5월 기간 중 조사지원과 등 8개 부서에서 채용공고시 동 표준안을 미적용(10건) ☞ 도급조사원 채용공고에 ‘1일 단가’ 등을 표기하여 지원자들이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.	○○○○ 과 (○○청)	주의
2	임시조사원 채용 관리 부적정	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 운영 지침(2010.2.10.제정, 2011.12.1.개정)에 따르면, 통계청 근로자 등의 관리 및 채용사실 여부 공유 등을 위하여 인력관리시스템(자체 DB)에 사후평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, 사후 평가 결과 ‘미흡(D)’ 또는 ‘불량(E)’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한다고 규정. 그러나 ○○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2011~2013년도 중 사후 평가등급이 부적격(D, E)인 임시조사원 2명, 중도 포기자 2명 등 총 4명을 재 채용한 사례 발생	○○○○ 과 (○○청)	주의

연번	제 목	지 적 사 항(요지)	부서 및 관련자	처분 (안)
3	임시조사원 운영 지침 정비 필요	○ ○ ○ ○ 청 주관으로 2009. 4월 제정된 임시조사원 운영지침의 경우, 본청 조사기획과에서 제정(2011.12. 1.)한 『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 부운영지침』과 비교하여 “채용계획 공고게재 수단, 사전심사 점수, 사후심사 방법”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적시에 개정하지 않은 채 운영	○ ○ ○ ○ ○ 과 (○ ○ ○ ○ 청)	개선
4	무기계약직 근로자 효율적 교육 실시체계 구축	○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현장조사 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시키기 위해 통계교육원에서는 현장조사실무(2010년 개설), 설득심리학(2011년도 개설)과정 등을 개설하여 집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. - 그러나 ○ ○ ○ ○ 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2012 ~ 2013년도(5월 기준) 통계교육원 집합교육 이수현황을 보면, 지방청 자체 실시 및 위탁(구청 등)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엑셀 및 파워포인트과정에 교육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- 특히 2013년(5월 기준) 경우에는 21명의 교육인원중 직무교육 3, 엑셀 12, 파워포인트 6명으로 참석인원 대부분 전산교육에 집중. ☞ 통계교육원 집합교육의 경우 현장조사관련 직무전문 교육 위주 파견 필요	○ ○ ○ ○ ○ 과 (○ ○ ○ ○ 청)	권고

나. 평가분야

연번	제 목	지 적 사 항(요지)	부서 및 관련자	처분(안)
5	임시조사원 사후 평가표 간소화 필요	‘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세부운영지침’의 근무성적평가(사후평가)표는 “무기계약직과 수시기간제근로자”의 업무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요소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. - 수시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이 빈번하고 채용기간이 짧으며, 대규모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후평가를 해야하는 등 채용기관의 업무부담이 크며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☞ 사후평가표의 평가요소를 현장에 맞게 간소화하는 등 개선 필요	○○○○ 과 (○○청)	개선

다. 모범사례

연번	제 목	지 적 사 항(요지)	부서 및 관련자	처분(안)
6	비공무원 부서이동 및 담당업무 순 환으로 업무효율 성 제고	- 무기계약직 현장조사 근로자의 동일부서 장기 근무 및 동일업무 장기 담당으로 인한 매너리즘 발생 방지 및 상호 타 업무이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도 2월 비공무원들의 의견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부서이동 및 업무변경 실시 - 지방청 최초로 총 11명의 비공무원을 조사과 상호간 부서이동 시켰으며, 울산 등 7개 지방사무소 내 총 29명의 장기 동일업무 담당자도 부서 내 업무순환 실시 ☞ 장기간 업무담당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을 뿐 아니라 타 업무 이해 증진, 나아가서는 신규업무에 대한 창의적 직무능력 발휘의 계기를 만듦.	○○○○ 과 (○○청)	통보

Ⅲ. 후속조치

1. 감사결과 활용

- 감사결과 자료는 처분완료 후 즉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사사례 및 시행착오 발생을 예방

2. 재심의 등

- 통계청장의 조치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수감기관의 장은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제기 가능(통계청 자체감사규정 제37조)
-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

3. 보고서 발간

- 감사결과 보고 후 「감사결과 보고서(책자)」를 인쇄·배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 발생 방지
- 본청 및 소속기관 모든 부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함

4. 추진 일정

- 처분요구서 통보 : ~'13. 7. 2.
-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'13. 7. 3. ~ 8. 2.
-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 등재 : '12. 8월